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18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서영석·정성호·김재원

이해식 • 전진숙 • 김원이

이인영 • 이수진 • 남인순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 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 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조산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 관리
 - 나.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 다. 조산(助産)에 따른 검사, 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 동

제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 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인) ① (생 략)	제2조(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②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	
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	
명을 가진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	4. 조산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를 임무로 한다.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u>가. 조산(助産) 및 산전·산</u>
	후 관리
	나.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
	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다. 조산(助産)에 따른 검사,
	처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건활동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	제6조(조산사 면허)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	
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허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제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한다.

1. ~ 4. (생 략) <신 설>

<u>5.</u> (생 략) ② ~ ① (생 략)

	_						

- 1. 2. (현행과 같음)
-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 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4.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u>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u>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u>자</u>

∥33조(개설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방문조산을 하는 경 우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